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용하는 첩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을”이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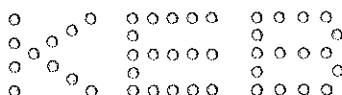
제2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업무협조)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소유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 기타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이하 총칭하여 “자본시장법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준수의무) ①“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상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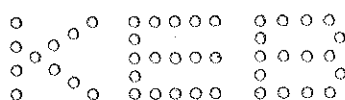
제5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 이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①“을”은 “을”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배당을 “갑”에게 요구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이면계약 등에 따라 “갑”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 지시, 요청을 하는 행위 등 “갑”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집합투자재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 등에 간섭할 수 없다. ②“갑”은 “을”,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투자광고물의 심사) ①“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편 제3장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2-42조제1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



자광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수익률의 표시) “을”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상 의무기재사항)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증권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임을 표시하는 문언

제11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추가약정) ①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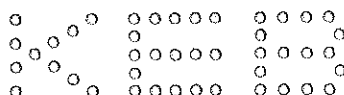
②“갑”과 “을”이 첨부된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에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첨부에 기재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제13조(세부사항) ①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첨부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3.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4.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09년 4월 일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Larry Klane

